

조례안 내용	수정안	수정이유
-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조정	- 현행 유지	- 현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산림훼손 예방 및 급경사 붕괴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, 경사도 등 완화할 경우 자연훼손 및 난개발 우려됨 - 향후 관내 조선, 항공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부지 조성 등 대비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의견이 있으나, 완화할 경우 재난재해 위험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	-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로 조정	- 산지법상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어 산지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함
	-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	- 인구소멸 지역으로 토지 거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귀농귀촌할 수 있는 계기 마련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20조)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,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

현재 기준	개정안
· 20도 이상 토지비율 <u>30%</u> 이하	· 20도 이상 토지비율 <u>40%</u> 이하
· 개발 부지의 기준지반고 <u>50m</u> 미만	· 개발 부지의 기준지반고 <u>70m</u> 미만
· 해안도로와 해안 사이의 토지 개발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<u>심의 대상</u>	· <u>심의 대상 제외</u>

-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평균경사도와 관련하여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, 이 중 2건은 추가완화(평균경사도 20 → 25도) 및 현행 조례 유지 1건임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일부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
-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및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